

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법 제175조제3항제1호의3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”란 교통사고로 발생한 과실비율 관련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를 말한다.

제9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85조 본문”을 “법 제185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96조의4부터 제96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6조의4(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직접 수행 등) 법 제185조제3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”이란 서면,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,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.

제96조의5(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의 위탁) ①법 제18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평가 기준

2..위탁 대상 업무범위

3.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②법 제185조제4항제2호에서 말하는 “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“이란 각 보험회사의 직전년도 손해사정 위탁 건수의 100분의 50을 말한다.

제96조의6(손해사정 업무 위탁시 보험회사의 불공정행위 금지) 법 제185조제5항제8호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.

1. 위탁계약을 맺은 손해사정업자를 평가할 때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차별하는 행위
2.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불공정한 행위

제96조의7(손해사정사 보수교육) ①법 제186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는 소속 손해사정사, 보조인에게 최초로 등록 또는 신고(등록 또는 신고가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)한 날부터 2년이 지날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12개월 이내(이하 “교육기간”)에 별표 4 제4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해야 한다.

② 법 제18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인 손해사정업자(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)는 최초로 등록 또는 신고(등록 또는 신고가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)한 날부터 2년이 지날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12개월 이내(이하 “교육기간”)에 별표 4 제4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③보험협회,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업자 등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체를 구성

• 운영할 수 있다.

④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세부적인 기준, 방법 및 절차, 제3항에 따른 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제96조의8(손해사정업자의 공시) 법 제187조 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

2.회사의 재무, 손익 등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

3.그 밖에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별표 4 중 “(제2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)”을 “(제29조의2제1항부터 제4항 및 제96조의7제1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)”으로 한다.

별표 4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손해사정사의 교육기준

구분	교육기준
가. 교육과목	1. 손해사정 관련 윤리교육 2.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사례 3. 손해사정서 작성방법 및 손해사정 실무 4. 이 외 손해사정업무에 필요한 사항
나. 교육기관	보험회사, 손해사정업자, 법 제17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·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,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
다. 교육방법	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

라. 교육시간	20시간(보조인은 15시간, 2개이상 종목의 손해사정 자격 보유시 30시간)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. 이 경우 금융위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부 교육시간을 5시간 이상 포함해야 한다.
---------	---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손해사정사 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) 제96조의7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손해사정사(종전의 법 제8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고된 사람을 포함한다) 중 등록 후 2년이 지난 사람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등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4조(보험협회의 업무) <신 설>	제84조(보험협회의 업무) ① 법 제175조제3항제1호의3에서 “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”란 교통 사고로 발생한 과실비율 관련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를 말한 다.
(생 략)	②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)
제96조의3(손해사정사 고용의무) 법 제185조 본문에서 “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보험회사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.	제96조의3(손해사정사 고용의무) 법 제185조제1항-----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96조의4(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 직접 수행 등) 법 제185조 제3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”이란 서면, 문자메 시지, 전자우편,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 다.
<신 설>	제96조의5(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의 위탁) ①법 제185조제4

<신 설>

항제1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평가 기준
2. 위탁 대상 업무범위
3.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② 법 제185조제4항제2호에서 말하는 “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각 보험회사의 직전년도 손해사정 위탁 건수의 100분의 50을 말한다.

제96조의6(손해사정 업무 위탁시 보험회사의 불공정행위 금지)
법 제185조제5항제8호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”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.

1. 위탁계약을 맺은 손해사정업자를 평가할 때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차별하는 행위
2.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

<신 설>

여 고시하는 불공정한 행위
제96조의7(손해사정사 보수교육)

①법 제186조의2제1항에 따라
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
자는 소속 손해사정사, 보조인
에게 최초로 등록 또는 신고(등
록 또는 신고가 유효한 경우로
한정한다)한 날부터 2년이 지날
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12개월
이내(이하 “교육기간”)에 별표
4 제4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
해야 한다.

② 법 제186조의2제2항에 따라
개인인 손해사정업자(제186조
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
다)는 최초로 등록 또는 신고
(등록 또는 신고가 유효한 경우
로 한정한다)한 날부터 2년이
지날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12
개월 이내(이하 “교육기간”)에
별표 4 제4호의 기준에 따라 교
육을 받아야 한다.

③보험협회, 보험회사 및 손해
사정업자 등은 제1항부터 제2항
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효
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

<신 설>

한 단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④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세부적인 기준, 방법 및 절차, 제3항에 따른 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4. 손해사정사의 교육기준

구 분	교육기준
가. 교 육 과 목	1. 손해사정 관련 윤리교육 2.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사례 3. 손해사정서 작성방법 및 손해사정 실무 4. 이 외 손해사정업무에 필요한 사항
나. 교 육 기 관	보험회사, 손해사정업자, 법 제17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·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,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
다. 교 육 방 법	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
라. 교 육 시 간	20시간(보조인은 15시간, 2개이상 종목의 손해사정 자격 보유시 30시간)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. 이 경우 금융위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부 교육시간을 5시간 이상 포함해야 한다.

<신 설>

제96조의8(손해사정업자의 공시)

법 제187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- 1.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
- 2.회사의 재무, 손익 등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
- 3.그 밖에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